

의안번호	2208744
의 퇴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5.4.10.
추계번호	25C136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억 2,400만원(연평균 8억 2,5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회적 인식개선 등 (안 제41조의2)	793	808	825	841	858	4,124	8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1조의2 (사회적 인식개선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1조의2 (사회적 인식개선 등)	○	-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비용은 유사 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입양인식개선 홍보·교육”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해당 아동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“입양인식개선 홍보·교육”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41억 2,400만원(연평균 8억 2,5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 및 입양부모교육 운영 사업을 실시¹⁾하고 있고, 2025년 예산은 7억 7,700만원임
 - 추계기간 중 매년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²⁾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회적 인식개선 등 (안 제41조의2)	793	808	825	841	858	4,124	8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

- 1) 해당 사업은 입양인식개선 매체 홍보, 입양인식개선 교육, 위탁기관 실무자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유사사례로 준용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.3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1.9	2.0	2.0	2.0	2.0	2.0